

# 2024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전체 RFP 공통 적용사항

## □ 치매 기준

- 치매는 사람의 정신(지적)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실을 말하며, 어떤 사람의 일상 생활의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 치매라고 정의함, 원인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, 혈관성 치매, 파킨슨병, 루이소체 치매, 헌팅톤병, 크루츠펠트-제이아콘병, 픽병 등이 포함되고, 경도인지장애, 치매의 다른 원인들과 치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질환들 (조발성치매, 전두엽치매, 알콜성치매), 기타치매 (유전성, 대사성, 염증성, 외상성, 가성치매 등) 등이 속함 (출처: 대한치매학회)

## □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작성시 필수확인 사항

구분	내용
과제구성 공통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/위탁연구개발과제를 구성 가능하며,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·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과제 구성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•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</li> <li>• 공동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</li> <li>•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</li> </ul>
논문성과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야 하며, Review(종설) 논문은 성과 인정 제외</li> <li>○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급 연구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</li> <li>○ 최종평가 시 연구내용과 관련 없는 성과는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</li> <li>○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, 성과실적 계산을 위한 학문(질환) 영역별 journal 분류기준은 <b>해당 논문이 게재된 당해년도의 Journal Citation Reports(JCR)</b>을 활용</li> <li>○ 2개 이상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, 병렬 사사표기가 가능하며 성과 입력 시 각 과제가 논문에 기여한 기여율의 합이 100이 되도록 기여율 기입 필요</li> <li>○ 입력된 성과의 기여율을 반영하여 성과로 인정하며 기여율의 합이 100이 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는 경우 1/N으로 적용됨</li> <li>○ 논문 발표 시,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의 성과임을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하여야만 성과로 인정함              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* 국문 표기: (국문) “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(Korea Dementia Research Center, KDRC)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(과제 번호(예시): RS-2024-12345678)”</p> <p>* 영문 표기: “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Dementia Research Project through the Korea Dementia Research Center(KDRC),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&amp; Welfare and Ministry of Science and ICT, Republic of Korea (grant number: RS-2024-12345678)”</p> </div> </li> </ul>
마일스톤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연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 이후 최종 평가 결정을 하기 위한 핵심자료임. 지원기간 이내에 달성이 가능한 마일스톤 제시 필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년 과제의 경우, 과제신청시 5(3+2)년간의 마일스톤(정량지표)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/중단 결정을 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도 활용</li> </ul> </li> <li>○ 단계 과제의 경우, 단계보고서는 과제 연구개발 1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계속/중단을 결정함</li> </ul>

<p>기초·임상연구 레지스트리(TRR) 이용 및 기탁 관련 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수집한 혈액·체액 샘플 및 환자 정보는 기초·임상 연구 레지스트리(TRR)의 운영계획에 따라 연차별 연구기간 내에 등록 및 기탁해야 함. 또한, 등록 기탁된 데이터 및 자료는 향후 치매관련 통합정보 및 서비스 플랫폼인 K-Dementia 빅데이터 허브 구축 등에 연계 예정이므로 선정된 과제는 관련 내용을 연구계획서 내에 명시하여 IRB 승인을 득해야 함</li> <li>○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료, 데이터 등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에서 구축한 TRR-DPK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양이 가능함</li> <li>※ 연구자가 신청한 정보 및 자원에 대해 분양심의를 거쳐 제공 예정</li> </ul>
<p>인허가 및 임상시험 관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외 인허가 신청시 해당국가 및 규제기관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</li> <li>○ 임상시험을 실시할 과제의 경우, 해당국가 규제기관(예,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, 미국FDA)으로부터의 임상시험계획(IND) 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(임상시험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)를 제출하여야 함</li> </ul>
<p>기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제신청 마감일까지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사전선별 시 탈락됨</li> <li>○ 외부기술을 도입한 경우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함</li> <li>○ 국제공동연구인 경우 국내 주관연구기관이 글로벌 상업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권리를 확보해야 함</li> <li>○ 국문이나 영문 이외의 자료는 공인된 기관의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</li> <li>○ 과제 선정 후 연구책임자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,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위한 중점분야별 협의체 구성·운영에 참여해야 하며, 해당 협의체 참여 실적은 향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</li> <li>○ 일반적인 평가 관련 사항은 ‘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(안)’ 참고</li> <li>○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, ‘보건의료 R&amp;D 성과관리 매뉴얼’에 따라 성과 검증을 진행함</li> </ul>

□ 보건의료 R&D 분야 기술성숙도(TRL/BRL) 예시

구분	TRL 1	TRL 2	TRL 3	TRL 4	TRL 5	TRL 6	TRL 7	TRL 8	TRL 9
<b>의약품 (신약)</b>	<b>(과학적 발견)</b> ○ 기술개발 초기 단계 ○ 과학적 발견을 통해 신기술 가능성 탐색	<b>(개념설정/정립)</b> ○ 가설 설정 ○ 연구계획·방법 수립 ○ 동료전문가 검토	<b>(개념검증, POC)</b> ○ 기초연구, 정보수집 및 분석 ○ 신약개발 기술성 평가 ○ 초기후보물질 도출 및 작용기전 파악	<b>(in vivo 검증)</b> ○ Non-GLP 생체내(in vivo) 안전성 ○ 유효성 확보	<b>(GLP 검증)</b> ○ GLP 비임상 연구 ○ 임상용 GMP 공정 확립	<b>(임상1상)</b> ○ 임상1상 진행·완료	<b>(임상2상)</b> ○ 임상2상 진행·완료	<b>(임상3상)</b> ○ 임상3상 진행·완료	<b>(임상4상)</b> ○ 시판 ○ 시판 후 연구
<b>의료 기기</b>	<b>(기본원리)</b> ○ 기초이론 정립	<b>(기술개념/적용분야)</b> ○ 개념 및 응용분야 정립	<b>(개념검증)</b> ○ 특허출원 ○ 기본성능 검증	<b>시작품 제작</b>		<b>전임상</b>		<b>(임상)</b> ○ 허가용 임상 시험	<b>(양산)</b> ○ 시판 ○ 시판 후 연구
				<b>(설계/제작)</b> ○ 시작품 제작	<b>(신뢰성)</b> ○ 시작품 성능 평가	<b>(실험실)</b> ○ 초기 안전성·유효성 평가	<b>(GLP)</b> ○ GLP 안정성·유효성 평가		
<b>의료 기술</b>			○ 의료기술 개발(진단법, 치료법 등)	○ 의료기술 검증	○ 의료기술 검증	○ 임상시험			
<b>바이오 마커 (Biomarker Readiness Levels)</b>	<b>BRL 1</b>	<b>BRL 2</b>	<b>BRL 3</b>	<b>BRL 4</b>	<b>BRL 5</b>	<b>BRL 6</b>		<b>BRL 7</b>	
	○ 기초개념 관찰 및 보고	○ 바이오마커 평가기술 입증	○ 분석적/실험적 개념 검증	○ 실험실 환경에서의 요소/시스템 입증	○ 관련 환경(예: 코호트)에서의 시스템 효능 입증	○ 모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 테스트 및 입증		○ 일반인에 대한 스크리닝/진단 테스트	

# 2024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

## 「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」 과제제안요구서(RFP)

과제제안요구서명 (세부사업명)	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 (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)	공모유형	품목지정형 (middle-up)	기술료 납부 대상	○
사업유형 해당여부	해당사항 없음				
기획 시 참조사항	미국, 유럽,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 관련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지향				

### ▶ 지원목적

- 글로벌 선도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치매극복 기반기술 개발(첨단기술 등)

### ▶ 지원대상

-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### 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간 연구비 (1차년도)	협약 형태	선정예정 과제수
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	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328백만원 이내/년 (246백만원)	다년도	6

- ※ 1차년도 연구기간 9개월 이내,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(9개월) 최대 지원 금액임
- ※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

### 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(예시)

지원분야	최종목표	지원내용(예시)
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	① 논문 1편 이상을 포함한 성과 실적 누적 5점 이상 - 단, 논문만으로 5점을 달성 하는 경우 목표 달성으로 인정하지 않음 ※ 성과실적 계산 기준은 특기사항 참조	○ 치매 원인규명, 신규타겟 발굴 등 치매극복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국제 공동연구

- ※ 제시된 연구목표는 최소 달성목표이며, 연구자가 이외 추가성과 제안 가능

▶ 특기사항

① 일반사항

-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(3책5공)에 해당하며, 대상국가의 협력연구자(기관)는 공동연구개발기관 형태가 아닌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'연구개발기관 외 기관'으로 명시하여 참여하여야 함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\* 입법예고 중으로, 개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(해외 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의 지위로 들어올 경우, 3책5공의 예외 적용 가능)

<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>

<p>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 제3항(신설) :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 소재 기관과 공동연구(해외기관이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과제에 한함)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4호(신설) : 외국인 또는 외국의 기관·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·운영하는 법인 중 기술확보, 인력양성 등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</p>
---

- 해외 연구책임자는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은 산학연병 소속 연구자여야 하며, 국내 소재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
- 주관연구책임자로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전체 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수행 가능
  -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선정된 연구자의 경우, 해당 과제 종료 시까지 사업단 타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원 불가

② 성과관련

- 아래 성과실적 계산기준 표를 참고하여, 과제종료시까지 논문 1편 이상을 포함한 성과실적 누적 5점 이상 달성 필수
- ※ 교류 성과는 종류별 각 1회에 한해 성과가 인정되며(컨퍼런스 1회, 인력교류 1회로 제한), 논문, 특허, 실용화·사업화 성과는 동일 종류의 성과를 여러 건 창출하는 것도 가능

< 성과실적 계산 기준 >

구분	성과	점수	구분	성과	점수
논문	SCI(E) 상위 10% 이내	3점	실용화 · 사업화	기술 이전	4점
	그 외 SCI(E)	1점		제품 출시	5점
특허	국내·국외 출원	0.5점		상위단계 IND 승인 (임상시험 연구에 해당)	6점
	국내 등록	2점		규제당국 품목허가	7점
	국외 등록	3점			
교류	국제 공동 컨퍼런스 개최	1점			
	인력 교류	1점			

- 최소 1건 이상의 논문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책임자와 상대국가의 연구책임자가 모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함
- 논문, 특허성과에 해당 사업의 사사 표기 필수
- Review 논문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
- 인력교류는 과제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1개월 이상 체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
- 국제 공동 컨퍼런스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연구회의로서 단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는 성과인정이 불가하며, 전일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포스터, 프로그램 안내서 등 증빙제출 필요
- 성과는 과제 최종보고서에 제출된 성과까지 인정(증빙포함)

③ 해외연구기관 관련

- 해외연구기관 참여 필수, 2개 이상 복수 기관 참여 가능
  - 해외연구기관이 지원 기업과 자회사 등의 관계인 경우는 불가

- 해외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 및 우수한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(특허, 품목허가, 기술 수출, 매출액, 협력네트워크/활동 등 구체적 기술)
- 연구개발계획서에 '연구개발기관 외 기관'으로 명시(전산입력 시 참고)
- 해외 비임상·임상시험을 위한 CRO 등 단순 용역기관은 해외연구기관으로 참여 불가하며, CRO 비용 또한 본 과제 연구개발비용으로 계상 불가(본 RFP는 국제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, RFP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지향함)
- 해외연구기관 파트너(상대국 연구책임자)
  - 본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기관과 세부적으로 논의할 해외연구기관 소속 책임자로, 파트너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에 대해 작성
-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활동
  - 주관연구개발기관(또는 주관연구책임자)과 해외연구기관 간 현재까지 추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 함께 제시할 것(인력교류, 세미나, 기술미팅, 공동학회발표 등)
- 연구계획서 작성 시 국내외 기관 간 공동연구 역할분담 계획, 기관 간 연구성과 분배방안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제시
  -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시, 협업 예정인 해외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 연구책임자가 명시되어있고, 해외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기여 부분(현금/현물 등), 해외협력기관과의 구체적인 기술협력, 역할분담 등이 반영된 공동연구 수행 증빙자료(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담계획이 기재되어있고, 이를 양측 연구책임자가 이해하고 있다는 서명이 포함된 LoI 등) 제출
  - 가능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마일스톤(milestone, 정량지표) 제시
  - 기존 국제협력(교류협력, 공동연구 등)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,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사업과의 성과 연계·확대 방안 제시
- ※ 국제공동연구 결과로 창출된 성과 등의 소유권·사용권·기술료 등과 관련한 내용은 향후 관련 규정·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될 예정
- 본 연구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, 국내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, 위탁)의 연구진이 사용하여야 함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	공고안내서 '붙임 4] 가감점 부여기준' 참고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구두 평가	1.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개발 목표/추진 방법의 적절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(10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 추진 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한가?</li> <li>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li>○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연구 목표 실현 가능성 (10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개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한가?</li> <li>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하고,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?</li> </ul> </li> </ul>
	2.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(3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내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(10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연구진은 충분한 유관 연구 수행경험 및 성과(논문, 기술이전, 사업화 실적 등)를 보유하고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국외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및 기여도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외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는가?</li> <li>- 협력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, 국외 연구자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국외 연구기관의 기여도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외 연구기관이 연구비, 인프라 등을 충분히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연구팀 조직구성의 적절성 (5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·외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조직 구성이 해당 연구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역량,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<b>3.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·협력 가능성 (30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연구 수행이 국제 공동연구로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가?</li> </ul> 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·외 참여 기관 간 협력 분담이 적절하게 나뉘어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국외 연구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계획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적 협의 절차를 거쳤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<b>4.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15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결과를 제시하였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연구결과의 파급효과 (5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 연구 기술 및 학술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</li> <li>- 국내외 연구자 간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※ 공모 지원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

과제제안요구서명 (세부사업명)	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 (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)	공모유형	품목지정형 (middle-up)	기술료 납부 대상	○
사업유형 해당여부	해당사항 없음				
기획 시 참조사항	미국, 유럽,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 관련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지향				

▶ 지원목적

- 국제적 협력연구를 통한 치매 예측·예방·치료 글로벌 실용화 기술 개발

▶ 지원대상

-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간 연구비 (1차년도)	협약 형태	선정예정 과제수
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개발	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890.6백만원 이내/년 (667.95백만원)	다년도	6

- ※ 1차년도 연구기간 9개월 이내,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(9개월) 최대 지원 금액임
- ※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(예시)

지원분야	최종목표	지원내용(예시)
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 개발	① 논문 1편 이상을 포함한 성과 실적 누적 10점 이상 - 단, 논문만으로 10점을 달성 하는 경우 목표 달성으로 인정 하지 않음  ※ 성과실적 계산 기준은 특기사항 참조	○ 치매 예측·예방·치료 실용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

- ※ 제시된 연구목표는 최소 달성목표이며, 연구자가 이외 추가성과 제안 가능



▶ 특기사항

① 일반사항

-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(3책5공)에 해당하며, 대상국가의 협력연구자(기관)는 공동연구개발기관 형태가 아닌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'연구개발기관 외 기관'으로 명시하여 참여하여야 함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\* 입법예고 중으로, 개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(해외 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의 지위로 들어올 경우, 3책5공의 예외 적용 가능)

<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>

\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 제3항(신설) :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 소재 기관과 공동연구(해외기관이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과제에 한함)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.

\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4호(신설) : 외국인 또는 외국의 기관·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·운영하는 법인 중 기술 확보, 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

- 해외 연구책임자는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은 산학연병 소속 연구자여야 하며, 국내 소재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
- 주관연구책임자로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전체 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수행 가능
  -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선정된 연구자의 경우, 해당 과제 종료 시까지 사업단 타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원 불가

② 성과관련

- 아래 성과실적 계산기준 표를 참고하여, 과제종료시까지 논문 1편 이상을 포함한 성과실적 누적 10점 이상 달성 필수
- ※ 교류 성과는 종류별 각 1회에 한해 성과가 인정되며(컨퍼런스 1회, 인력교류 1회로 제한), 논문, 특허, 실용화·사업화 성과는 동일 종류의 성과를 여러 건 창출하는 것도 가능

< 성과실적 계산 기준 >

구분	성과	점수	구분	성과	점수
논문	SCI(E) 상위 10% 이내	3점	실용화 · 사업화	기술 이전	4점
	그 외 SCI(E)	1점		제품 출시	5점
특허	국내·국외 출원	0.5점		상위단계 IND 승인 (임상시험 연구에 해당)	6점
	국내 등록	2점		규제당국 품목허가	7점
	국외 등록	3점			
교류	국제 공동 컨퍼런스 개최	1점			
	인력 교류	1점			

- 최소 1건 이상의 논문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책임자와 상대국가의 연구책임자가 모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함
- 논문, 특허성과에 해당 사업의 사사 표기 필수
- Review 논문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
- 인력교류는 과제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1개월 이상 체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
- 국제 공동 컨퍼런스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연구회의로서 단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는 성과인정이 불가하며, 전일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포스터, 프로그램 안내서 등 증빙제출 필요
- 성과는 과제 최종보고서에 제출된 성과까지 인정(증빙포함)

③ 해외연구기관 관련

- 해외연구기관 참여 필수, 2개 이상 복수 기관 참여 가능
  - 해외연구기관이 지원 기업과 자회사 등의 관계인 경우는 불가

- 해외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 및 우수한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(특히, 품목허가, 기술 수출, 매출액, 협력네트워크/활동 등 구체적 기술)
- 연구개발계획서에 '연구개발기관 외 기관'으로 명시(전산입력 시 참고)
- 해외 비임상·임상시험을 위한 CRO 등 단순 용역기관은 해외연구기관으로 참여 불가하며, CRO 비용 또한 본 과제 연구개발비용으로 계상 불가(본 RFP는 국제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, RFP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지향함)
- 해외연구기관 파트너(상대국 연구책임자)
  - 본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기관과 세부적으로 논의할 해외연구기관 소속 책임자로, 파트너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에 대해 작성
-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활동
  - 주관연구개발기관(또는 주관연구책임자)과 해외연구기관 간 현재까지 추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 함께 제시할 것(인력교류, 세미나, 기술미팅, 공동학회발표 등)
- 연구계획서 작성 시 국내외 기관 간 공동연구 역할분담 계획, 기관 간 연구성과 분배방안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제시
  -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시, 협업 예정인 해외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 연구책임자가 명시되어있고, 해외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기여 부분(현금/현물 등), 해외협력기관과의 구체적인 기술협력, 역할분담 등이 반영된 공동연구 수행 증빙자료(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담계획이 기재되어있고, 이를 양측 연구책임자가 이해하고 있다는 서명이 포함된 LoI 등) 제출
  - 가능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마일스톤(milestone, 정량지표) 제시
  - 기존 국제협력(교류협력, 공동연구 등)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,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사업과의 성과 연계·확대 방안 제시
- ※ 국제공동연구 결과로 창출된 성과 등의 소유권·사용권·기술료 등과 관련한 내용은 향후 관련 규정·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될 예정
- 본 연구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, 국내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, 위탁)의 연구진이 사용하여야 함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	공고안내서 [붙임 4] 가감점 부여기준' 참고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구두 평가	1.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개발 목표/추진 방법의 적절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(10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 추진 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한가?</li> <li>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li>○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연구 목표 실현 가능성 (10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개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한가?</li> <li>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하고,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?</li> </ul> </li> </ul>
	2.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(3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내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(10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연구진은 충분한 유관 연구 수행경험 및 성과(논문, 기술이전, 사업화 실적 등)를 보유하고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국외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및 기여도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외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는가?</li> <li>- 협력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, 국외 연구자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국외 연구기관의 기여도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외 연구기관이 연구비, 인프라 등을 충분히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연구팀 조직구성의 적절성 (5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·외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조직 구성이 해당 연구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역량,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<b>3.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·협력 가능성 (30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연구 수행이 국제 공동연구로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가?</li> </ul> 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·외 참여 기관 간 협력 분담이 적절하게 나뉘어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국외 연구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계획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적 협의 절차를 거쳤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<b>4.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15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결과를 제시하였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연구결과의 파급효과 (5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 연구 기술 및 학술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</li> <li>- 국내외 연구자 간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※ 공모 지원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